

## ㈜파이어스톤투자자문

본 계약권유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7 조 제 1 항에 의거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자료입니다.

제 1 조 [투자자문서비스의 범위] 투자자문서비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투자자문자산의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일체
2. 투자자문자산에 편출입할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종목, 수량 및 가격에 관한 사항 일체
3. 투자자문자산에 편출입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구분, 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 일체
4. 기타 이와 관련된 부수사항

제 2 조 [투자자문 대상] 투자자문자산을 자문(운용)함에 있어 그 투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 조(금융투자상품)에 명시된 금융투자상품
2.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 비상장 주식 등 지분증권
3.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사채권, 특수채증권 등 채무증권
4.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
5. 기타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투자증권

제 3 조 [투자자문의 방법] 투자자문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미팅, 전화, 이메일, 팩스, 이와 상응하는 전자통신 등 양자간에 합의한 방법으로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고객이 자문의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자문업무를 진행한다.

제 4 조 [고객과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기준 및 절차]

1. 회사는 자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 5 조 [고객과 회사의 금지사항]에 명시한 것과 같이 고객과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규정으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규정을 준수한다.
2.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 평가한 결과 그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3. 당해 투자자문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 및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한다.
4. 고객의 투자자문 요구 방법이나 시기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한다.

제 5 조 [고객과 회사의 금지사항]

1. 고객은 투자자문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회사가 제공한 투자자문 서비스를 본 계약에 해당하는 고객의 투자자문자산 이외의 자산 또는 제 3 자의 자산을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회사가 제공한 투자자문서비스의 내용을 제 3 자에게 누설하거나 제 3 자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2. 회사는 투자자문 또는 일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 위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 3 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 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 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일임제산을 운용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 판단에 관한 자문 또는 매매 의사를 결정할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등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 3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운용방법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7.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제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8.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할 법인의 특정증권 등(제 172 조 제 1 항의 특정증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제 176 조 제 2 항 제 1 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제산으로 그 특정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
9.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10. 투자일임제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제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 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11. 투자일임제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12.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제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13. 투자일임제산을 각각의 투자자 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14. 투자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위임 받는 행위
15. 투자일임제산을 위탁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16. 투자일임제산을 위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17. 투자일임제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1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 6 조[투자자문 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 및 절차]

1. 계약체결 전- 회사소개, 투자자문계획, 계약권유문서 등 설명 및 서류 교부
2. 고객상담 - 투자 자문계약희망고객의 제무상태, 투자성향, 투자목적 등 파악
3. 계약서 작성- 투자자문계약 체결, 계약서 작성 및 교부
4. 자문 업무 수행 - 리서치 및 리스크 관리, 사전에 협의된 방법으로 투자자문 업무 수행
5. 자문 결과 평가 -자문 결과 평가, 고객 의견 청취 및 수렴

제 7 조[투자자문 업무 담당자에 관한 사항]

1. 당사의 투자자문 담당자의 성명과 주요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성호	Northeastern University 금융학전공 졸업 아이포스투자자문 주식운용/경영지원 투자자산운용사 자격 취득
-----	---

2. 당해 임직원은 과거에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임의매매 등 증권거래법상의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의 요구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제 8 조[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당사의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에 관한 사항

정성호	사내이사
황동선	감사

2. 당해 임직원은 과거에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임의매매 등 증권거래법상의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의 요구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3. 대주주에 관한 사항

㈜파이어스톤홀딩스	본인(지분율 55.1%)
황동선	특수관계인(지분율 44.9%)

제 9 조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회사는 고객에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사분석을 근거로 한 합리적 투자절차를 수립하며 그 방법과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성실한 가치분석 및 투자모델에 따른 가격분석
2. 객관적인 위험관리
3. 중장기적인 투자관점 지향
4. 원활한 의사소통 및 고객중심의 투자

제 10 조 [고객이 부담할 책임] 정당한 투자결과로 발생한 손익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고객은 회사에게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